V 시사점 및 제언

본장에서는 보험사기의 현황 및 사례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험사기 범죄의 예방 및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1. 엄정한 수사 및 처벌

보험사기죄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다.[114] 실제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현황과 법원에서의 선고 현황을 살펴보니,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구약식에 의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자유형이 내려지더라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고 실형을 받더라도 대부분 3년 미만에 해당하였다. 일반 사기죄와 비교하여도 그 처벌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15]

물론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엄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할 수는 없으며, 처벌 수위가 낮으면 보험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엄하게 처벌하면 보험사기 범죄가 감소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보험사기죄에 대해서 일반 사기죄와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법원 판례들에 적시된 양형 이유에 의하더라도, “보험사기 범행 자체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114) 국민일보(2022. 1. 26), “이러니 사기치지... 십수억 보험사기범도 형량은 2년 8개월” 등

115) 처벌 수준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죄질이나 정상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보험사기죄와 일반 사기죄의 처벌 수준을 정확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전체 통계의 수치를 비교하면 그러함

제로는 보험사기죄가 일반 사기죄보다도 관대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관대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보험사기를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보험사기 증가에 일조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준(검찰사건처리기준 등) 및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립·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현재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기준 및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116]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기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보험사기죄에 대한 별도의 수사기준 및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해당 수사기준 및 양형기준에서는 우선 보험사기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 사기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별 사안에서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특히 연성 사기의 경우 범행 방법이나 경위, 피해금액 등을 놓고 볼 때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그렇게 불량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사정 등까지 감안되면 지금과 같이 관대한 처벌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보험사기죄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나 정상 그 자체만 놓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보험사기죄의 경우 특정 피해자(보험회사)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이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취지인 것이다. 이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준과 양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서 보험사기죄에 대한 위와 같은 엄중 처벌의 원칙을 명시하여 놓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보험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

116)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3 양형기준」에서는 살인, 뇌물, 강도, 횡령·배임, 사기, 마약, 증권·금융, 식품·보건, 성범죄, 폭력, 교통, 명예훼손, 선거, 조세, 사행성·게임물, 변호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환경범죄 등 46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음

고하여, 일반적인 범행의 경우와 조직적인 범행의 경우를 구분하여 조직적인 범행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117] 금액에 따른 양형 수준, 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보험업 관련 종사자(보험모집종사자, 손해사정사,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 등)가 직무 수행의 기회나 전문지식 등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또한 보험사기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별도의 부수범죄가 있는 경우 수사 및 기소가 좀 더 용이해질 수 있고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 판례들을 보면 부수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사안의 경우, 의료인이 허위의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고 환자로 하여금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보험사기죄(또는 방조죄)뿐만 아니라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 의료법 위반죄(진료기록부 부실기재)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인이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나 의료법 위반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는 것이다.[118] 최근 들어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죄와 더불어 의료인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는 의료법 위반죄의 죄책도 함께 철저히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119] 이에,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기준에서 부수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분에 관한 내용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부수범죄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실제 처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17)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는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를 구별하고, 범죄로 인한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① 1억 원 미만, 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③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④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⑤ 300억 원 이상) 기본적인 형량을 제시하고 있음

118) 해당 사안들에서는 허위진단서 작성죄나 의료법 위반죄가 사건명에서 아예 빠져 있는 경우로, 해당 죄에 대해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19) 나아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임

2.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특히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업무나 직업과 관련하여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보험모집종사자, 손해사정사,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 등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영업 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험모집종사자, 손해사정사,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 등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형사적으로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고 또한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행정제재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등이 보험업법 제102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20]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의료인이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121]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사업의 취소·정지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경

120)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90조 제2항, 제190조

121)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22)]

이에, 보험모집종사자, 손해사정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가담한 경우, 위 각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영업 정지,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험모집종사자, 손해사정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통보되고 사후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도 대검찰청 예규인 「인·허가 관련 범죄통보지침」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처분 결과나 재판 결과를 관련된 주무관청에 통보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 따라 실제로 보험사기죄와 관련하여 검찰이 보건복지부 등 주무관청에 처분 통보나 재판결과 통보를 한 내역 등 통계·자료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123)] 또한 위와 같이 보험업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특정 범죄(예를 들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를 제재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위(예를 들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제재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 범행의 방법이나 수단의 일환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보건복지부에 제대로 통보가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보험모집종사자나 손해사정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에 제대로 통보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통보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에서 실제로 영업 정지,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 처분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나 내역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제도 및 절차가 마련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

122)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3호 사목 및 제58조 제5항 제8호

123) 의료인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검찰 처분 결과나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내역·통계(보건복지부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내역·통계)에 관하여 대검찰청 및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그러한 통계나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신을 받았음. 아울러 의료인이 보험사기를 이유로 자격 정지된 경우,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부실기재를 이유로 자격 정지된 경우 등에 관한 통계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으나 역시 해당 통계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신을 받았음

한 내용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종합적·통일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 3항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정보의 공유 및 관리

앞서 보험사기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험사기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의 경우 주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비로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기 범행을 수사하고 처벌함에 있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항목에 금융당국의 자료제공요청권이 포함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처럼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선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에서 여러 관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기 관련 정보들을 수시로 공유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합동대책반 설치에 관한 내용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항목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당시 회의에서 합동대책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하위 입법이나 정부의 결정 등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하위 입법이나 정부 결정을 통해 보험사기 관련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현재 보험업법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보험조사협의회[124]를 통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경찰, 검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한국신용정보원, 보험협회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기 관련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공유하여 보험사기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124)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한국신용정보원 등으로 구성됨

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보험사기 조사나 수사를 위한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관련 각종 데이터 축적 및 사후 관리 등에 있어서도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서는 보험사기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나 통계 등을 집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보험모집종사자나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관청에 통보하고 이후 실제로 행정제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및 점검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러한 작업들이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종합적·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보험사기 관련 실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축적·관리하여 이를 보험회사,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에 공유함으로써 보험사기 조사·수사 및 대국민 홍보·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125] 특히 보험사기 건은 정식재판 없이 구약식에 의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 등이 많은데 이 경우 판례가 남지 않아 범죄사실 등이 공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험사기와 관련된 신종 수법이나 최신 트렌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약식 처리 건들의 범죄사실 내용도 파악하여 공유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이제까지 보험사기의 현황 및 사례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 범죄 방지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보았다.

우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현황을 보면 일반 사기죄보다도 관대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준 및 법원

125) 보험회사들 사이에서 보험사기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하고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을 세워놓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해당 기준에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범행 등 가중요소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부수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분에 관한 내용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현 상황에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의 경우 해당 업무나 직업과 관련된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모집종사자, 손해사정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에 통보되고 사후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합동대책기구나 보험조사협의회가 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또한 정부합동대책기구나 보험조사협의회는 위와 같은 행정제재 관련 통보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하여, 보험사기 조사·수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보험사기 실태 파악을 위한 각종 데이터의 축적·관리, 보험사기 관련 실제 사례들의 수집 및 공유 등에 있어서도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V-1〉 보험사기 범죄 방지를 위한 과제

엄정한 수사 및 처벌	• 보험사기죄에 대한 별도의 수사기준 및 양형기준의 정립·운영 -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 - 가중요소(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범행 등)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 부수범죄(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 규정
행정제재의 적극 활용	•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범죄 시 행정제재의 활용 - 개별 법령에 근거한 적극적 행정제재(영업 정지,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 - 보험사기죄로 기소 및 처벌 시 관할 당국에의 통보 및 사후 관리 시스템 정립·운영
정보의 공유 및 관리	•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반 또는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한 정보의 공유 및 관리 - 보험사기 조사·수사를 위한 정보 공유 - 행정제재를 위한 통보 및 사후 관리, 보험사기 관련 각종 데이터 및 통계 축적, 보험사기 사례의 집적 및 공유 등

앞서 제안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많고 많은 범죄들 중 유독 보험사기죄라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 이를 엄히 처벌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가 2016년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미 수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서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를 감축 및 예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상, 해당 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보험사기를 최대한 감소시키고 또한 예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작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본고에서 제안한 사항들도 함께 고려하여, 보험사기의 감소 및 예방을 통해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